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30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동물보호센터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보호기간 하한 설정	2
2. 등록대상동물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 상향	8
3. 부칙	1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황명선의원 등 20인

나. 제 안 일 : 2024. 10. 10.

다. 회 부 일 : 2024. 10.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동물의 기증·분양,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단순히 기증·분양되지 않는다 하여 적절한 보호기간 없이 안락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가 기증·분양받은 동물을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동물보호센터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보호기간 하한 설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 30일의 보호기간 하한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상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 「동물보호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¹⁾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²⁾ 규정하고 있음.

1) 「동물보호법」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센터는 현행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³⁾와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의 업무⁴⁾를 수행하여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바, 동물보호센터의 최근 3년간 구조동물 보호형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동물보호센터 구조동물 보호형태 현황 】

(단위: 마리, %)

구분	총계	반환	입양	기증	자연사	인도적 처리	보호중	기타
2021년	118,273 (100.0)	14,111 (11.9)	37,988 (32.1)	1,404 (1.2)	30,529 (25.8)	18,604 (15.7)	13,910 (11.8)	1,727 (1.5)
2022년	113,440 (100.0)	14,031 (12.4)	31,182 (27.5)	2,375 (2.1)	30,490 (26.9)	19,043 (16.8)	14,157 (12.5)	2,107 (1.9)
2023년	113,072 (100.0)	13,628 (12.1)	27,343 (24.2)	3,318 (2.9)	31,238 (27.6)	20,346 (18.0)	15,093 (13.3)	2,106 (1.9)
개	80,467 (100.0)	13,125 (16.3)	18,176 (22.6)	2,733 (3.4)	14,055 (17.5)	19,065 (23.7)	13,150 (16.3)	163 (0.2)
고양이	30,889 (100.0)	390 (1.3)	8,277 (26.8)	491 (1.6)	16,873 (54.6)	1,164 (3.8)	1,792 (5.8)	1,902 (6.2)
기타 동물	1,716 (100.0)	113 (6.6)	890 (51.9)	94 (5.5)	310 (18.1)	117 (6.8)	151 (8.8)	41 (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4) 「동물보호법」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5.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보호형태 중 인도적 처리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을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⁵⁾

현행법령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①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②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③ 현행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⁶⁾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⁷⁾

현행법령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유실·유기동물(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법 제34조제1항제2호)인 경우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

5) 「동물보호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 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동물보호법」 제45조(동물의 기증·분양)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록 하고,⁸⁾ 소유자등에게 학대받은 동물(법 제34조제1항제3호)인 경우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기증·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보호기간 등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하에 있는 동물이 기증·분양 곤란 등을 이유로 충분한 기간 동안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가 현행법 제43조¹⁰⁾ 및 제44조¹¹⁾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분양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동물을 보호하도록 보호기간의 하한을 설정하려는 것으로서,

8) 「동물보호법」 제40조(공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9)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보호조치 기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고 한다)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10) 「동물보호법」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1) 「동물보호법」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된다.

그 취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이 최소한의 적정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2023년 기준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의 구조동물 보호기간은 평균 27.8일¹²⁾¹³⁾인데, 개정안은 보호 중인 동물마다 적용되는 소유권 취득 이후 최소 보호기간을 이보다 긴 30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수용되는 경우 시설 및 운영인력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지방자치단체별 동물보호센터 구조동물 평균 보호기간(2023년 기준) 】

(단위: 일)

전 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7.8	14.6	19.4	16.8	19.9	20.2	26.1	23.0	38.8	25.5	32.4	24.8	34.9	33.2	37.8	35.7	33.0	23.1

주) 음영 표시는 평균 보호기간이 개정안에 따른 소유권 취득 후 보호기간 하한(30일)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2) 해당 평균 보호기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음

13) 참고) 현행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물 중 **제1호의 경우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바,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공고의 대상인 법 제34조에 따라 보호조치된 **유실·유기동물(제34조제1항제1호)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제34조제1항제2호)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10일과 소유권 취득 이후의 30일을 모두 더한 40일의 최소 보호기간이 적용**되게 됨

「동물보호법」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 및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40조(공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30일 이상 동물을 보호하도록 할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인력·예산 및 수용공간 등의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인 구조·보호조치를 할 수 없거나 사육환경이 악화되는 등 보호수준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 우려되므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현재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¹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중에서 2023년 말 기준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¹⁵⁾의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4)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 등록대상동물 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 상향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1조(과태료) ①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신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1. ~ 18. (생략)	2. ~ 19. (현행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삭제>
5. ~ 26. (생략)	5. ~ 26.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정의하고,¹⁶⁾

16)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⁷⁾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⁸⁾ 2023년 기준 총 3,286,216마리의 동물이 등록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동물 누적 등록 및 신규 등록 현황 】

(단위: 마리)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누적 등록 (신규 등록)	2,782,811 (510,004)	3,054,342 (302,597)	3,286,216 (271,173)
개	2,766,250 (500,321)	3,025,859 (290,958)	3,244,234 (257,989)
고양이	16,559 (9,683)	28,483 (11,639)	41,982 (13,184)

주1)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이 아니므로 등록 의무는 없으나, 소유자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등록을 받아주고 있음

주2) 누적 등록 마릿수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망으로 말소된 등록 동물이 제외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202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17)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제가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¹⁹⁾되어 현재 10년 이상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등록대상동물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²⁰⁾ 매년 신규 등록 마릿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관측되고 있으며, 동물등록의무 위반 적발에 따른 과태료 사례가 최근 3년간 매년 100건 이상에 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과태료 부과건수	124	190	10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수준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인상하려는 것인바, 그 취지는 금전적 제재 강화를 통하여 현행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맹견 관리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경우, 개정안과 동일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²¹⁾

19)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자율적인 동물등록제도는 종전부터 있었으나,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013. 1. 1. 시행)을 통하여 신설되며 등록의무가 부과되었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20) 서울신문, “반려견 아직 500만마리 미등록... 유인책 미흡해 신규등록 둔화”, 2024. 10. 21.

21)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한 등록의무를 위반한 소유자에게
맹견 관리의무를 위반한 맹견 소유자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이 제재조항 간 형평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 등록
률을 높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타 유사 사례를
고려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에서도 동물등록제 홍보 확대, 점검·단속
강화 등의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등록률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
므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6. 제24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개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소유자

3. 부칙

개정안은 ① 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② 안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적용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유권 취득 동물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시행일과 관련하여, 공포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은 ‘공포 후 시행까지 국민이나 시행기관에게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려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하위법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경우 법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사례가 많음.²²⁾

개정안은 안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보호기간의 하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의 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임.

22)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821.

적용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안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역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보호되도록 규정하는 것임.

다만, 개정안은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의 소유권 취득은 신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안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사안이므로 그 적용대상이 모호해지는바,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을 보호 중인 경우” 등의 계속 중인 사안으로 적용대상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7